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. 11. 26(화) 10:00

###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47호

나. 제 출 자 : 엄샛별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#### 2. 제안이유

이스포츠는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.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
다. 지원 및 이스포츠 시설 설치 · 운영(안 제4조 ~ 안 제5조).

라. 표창(안 제6조)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 및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2024. 11. 21.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과 구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.
  - 제2조 정의 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규정함.

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,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기이다. 대회 또는 리그와 같은 현장으로의 참여,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중계의 관전, 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의 사이버 문화 전반 또한 e스포츠 활동에 속한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e스포츠 [e-sports] (스포츠 백과, 2008., 대한체육회)
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3) 사업 및 이스포츠 시설 설치・운영(안 제4조~안 제5조).
  -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함.
  - 이스포츠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을 규정함.
- 4) 표창(안 제6조).

#### 다. 검토 의견

○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,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・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1990년대 말 컴퓨터 게임 및 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 창립 후 선수 관리, 경기 규칙,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음.
-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관계법령

□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(약칭: 이스포츠법) 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78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2. 24.>

- 1. "이스포츠" 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 (媒介)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.
- 2. "전문 이스포츠" 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 이스포츠" 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.
- 4. "이스포츠산업" 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5. "이스포츠시설"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,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6. "이스포츠 선수" 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7. "이스포츠 단체" 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방 이스포츠의 진흥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,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·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.